

2019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2019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3월 20일
행정안전부장관

1. 시험일시 : 2019. 3. 30.(토), 10:00~13:20(200분)

2. 시험장소 : 정부대전청사 2층 대회의실(3동 204호)

- 소재지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
-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, 교통편, 이동 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
- 시험 당일에는 **동·서현관**으로만 청사 출입이 가능합니다.

3.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

| 구분 | 시험과목 | 문제유형 | 문항수 | 시험시간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교시 필수과목 | 기록관리학개론, 전자기록관리론 | 4지 1택형 객관식 | 과목당 30문항 | 10:00~11:00 (60분) | 과목당 100점 |
| 11:00 ~ 11:25(휴식) | | | | | |
| 2교시 선택과목 | 기록평가·선별론, 기록조직론, 기록보존·기록정보서비스론 중 2개 과목 | 기입형 포함 주관식 | 과목당 7문항 | 11:40~13:20 (100분) | 과목당 100점 |

※ 시험실 입실 09:20까지(시험실 개방 08:00), 2교시 11:25까지

4. 출제유형 및 문항배점

- 필수과목(객관식) : 30문항 중 20문항 60점(20문항*3점), 10문항 40점(10문항*4점)
- 선택과목(주관식) : 7문항 중 제한적 논술 2문항 50점 기입형 포함 약술형 5문항 50점

5. 합격자 결정

-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

6. 응시자 준수사항

[일반사항]

1. 시험당일 09:20까지(2교시 11:25까지)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** 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2.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3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와 **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)을 **반드시 소지**하여야 합니다.
 - ※ 응시표 출력은 **3.25.(월) 09:00부터**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 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 - ※ 주민등록증 미신청 또는 분실로 인해 필기시험 전까지 소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주민등록증 신청 후 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시험당일 지참하십시오.
4. **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하오니 시험 전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십시오.**
 - ※ **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시험시간 재입실이 불가하며,** 당해 교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 (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)
5. **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** 지급된 모든 답안지와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6. **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불펜 똑딱소리 등)는 자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 내에서는 **흡연을 할 수 없으며,**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7. 시험시간 중에는 **휴대폰, 태블릿PC, 스마트시계,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**
8. 지정된 시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,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9.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.
10. **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**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**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 - ※ **계산·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시계 등)는 사용 불가**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

□ 공통 사항

1. 시험이 시작되면 **문제책의 과목명과 답안지 일치여부, 문제 누락·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**하여야 합니다.
2. 답안지에 응시번호,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. (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,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)
3. **답안은 반드시 답안지의 해당 과목란에 표기(기재)하여야 하며**, 해당 과목을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**본인이 표기(기재)한 답안대로 채점**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.
5. **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**,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.
6. 답안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 사항 작성은 **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**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시 위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7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□ 객관식 답안 작성 시 ※ 붙임 「객관식 시험 답안지 견본」 참조

1.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「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」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.
2. 답안은 매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만을**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.
※ **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 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**입니다.
3.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**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.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)
※ **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**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주관식 답안 작성 시 ※ 붙임 「주관식 시험 답안지 견본」 참조

1.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2. 답안지에는 통상적인 농도와 굵기의 **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**(사인펜이나 연필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)를 사용하되, 동일 답안지는 색상, 굵기 등이 동일한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
3.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,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4.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,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**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)
※ **수정테이프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,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**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5. 답안 작성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및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[기타 유의사항]

1. 응시자는 **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**, 불응 시,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.
2. 아래 예시된 행위의 **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『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7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**
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-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해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**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**

3. 이번 시험문제는 비공개 대상이므로, 시험 종료 후에 문제책을 회수합니다.

7. 합격자 발표 및 성적 확인

○ 합격자 명단은 2019. 4. 19.(금), 예정 국가기록원 홈페이지[<http://www.archives.go.kr>]에 게시하며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한 달간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| 시험명 | 합격자 발표일 | 성적 확인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9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| 4.19.(금), 예정 | 4.19.(금) 09:00 ~ 5.20.(월) 18:00 |

○ 문의처 :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/ ☎ 042-481-6256, 6258